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 캐나다의 IP가이드라인과 TREB 사건을 중심으로 -

나 지 원**

| 국문 요약 |

데이터 주도의 경제 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기업(특히 플랫폼 기업)은 이를 토대로 제품·서비스 혁신,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이 봉쇄되거나 어렵사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이다. 다만, 데이터를 오·남용하여 진입 비용을 높이고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쟁법 차원의 규제 필요성과 그 법리 구성에 대하여 세계 각 나라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캐나다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IP가이드라인)과 함께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Toronto Real Estate Board, TREB)의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이용제한이 캐나다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하 “대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사건은 캐나다 경쟁당국에 의하여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8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만큼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와 같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상 사건은 네이버 사건과 유사한 법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양자를 비교, 분석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 제한행위

* 이 논문의 자료조사와 집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교수님,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에 불과했던 글이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투고일자 : 2023.09.04., 심사일자 : 2023.09.20., 게재확정일자 : 2023.09.20.)

에 관하여 외국의 규정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 경쟁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제어 : 엠엘에스(MLS),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시장지배력 남용, 지식재산권의 행사, 경쟁법의 적용면제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캐나다의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
- III. TREB 사건의 개요와 TREB 판정의 주요 내용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I. 들어가며

데이터 주도의 경제(data-driven economy)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기업(특히 플랫폼 기업)은 이를 토대로 제품·서비스 혁신,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¹⁾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이 봉쇄되거나 어렵사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시키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규 경쟁자의 참가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²⁾ 사업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오·남

1)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개념 차이에 대한 학계의 정립된 개념은 없지만,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괄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규율의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차원의 논의는 김용훈,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2018, 180-182면. 이하에서 양자를 ‘데이터’로 통칭한다.

용하여 진입 비용을 높이고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경쟁법 차원의 규제 필요성과 그 법리 구성³⁾에 대하여 세계 각 나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ontents Provider)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0억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⁴⁾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주)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부동산 중개 관련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⁵⁾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위 멀티호밍(multi-homing)을 차단한 행위⁶⁾를 제재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⁷⁾

-
- 2) Maurice Stucke and Allen Grunes, Big Data and Competitio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70-175.
 - 3) 오승환,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 372면; 경쟁법 차원의 규율 논의는 (1) 플랫폼에 의한 과도한 데이터 수집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병행하여)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문제와 (2)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자의 데이터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019호(사건번호 2018서갑0345); 이 사건은 피심인(네이버)의 불복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누361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으로 소송 중이다.
 - 5) 조선비즈, 2022. 8. 16.자 기사, “네이버, 부동산 갑질 해명 ‘첩첩산중’... 행정소송 중 檢 압수수색”
 - 6) 과거 경쟁당국은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는 자본, 설비 등에 의한 외형적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다거나 혹은 유사한 경쟁사업자(경쟁 앱의 존재)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사한 정보서비스 앱 수개를 동시에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소위 ‘멀티호밍(multi-homing)’ 현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데이터에 의한 진입장벽 등을 부인하여 왔으나, 이는 데이터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를 간과한 오류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승환, 위 논문, 394면).
 -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2020. 9. 4.)

본 연구는 위 네이버 사건과 유사한 법적 쟁점과 판단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 부동산협회(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이하 “TREB”)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TREB은 1920년 설립되어 현재 약 70,000명의 중개사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⁸⁾ 중개사 회원들은 지역 부동산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TREB의 MLS(Multiple Listing Service)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TREB은 MLS 데이터베이스 정보 중 일부를 회원들이 데이터 전송망을 통해 수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회원들은 그들의 가상사무소(Virtual Office Websites, 이하 “VOW”)에서 고객들이 이 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TREB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과거 판매된 부동산 리스트와 가격데이터 등이 데이터망을 통해 VOW 등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전송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TREB의 정책은 VOW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중요한 부동산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없어 중개인과 고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문제되었다.

대상 사건은 캐나다 경쟁법¹⁰⁾의 적용사례로 캐나다 경쟁당국에 의하여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8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다. 대상 사건은 해외 경쟁법 집행사례로서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행위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에 관한 선례적인 경쟁법 집행 사례로 평가된다. 캐나다에서는 ML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저작권법(copyright)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¹¹⁾

8) TREB 홈페이지, <<https://trreb.ca/index.php/about-treb/who-we-are>>, 검색일: 2023.8.30.

9) MLS(Multiple Listing Services)란 중개사 회원들이 부동산 매물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회원들이 검색·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제휴를 맺은 리얼터닷컴(realtor.com)이 MLS와 연계되어 있다(LA중앙일보, 2023. 6. 1.자 기사, “부동산 웹사이트”).

10) 캐나다 경쟁법인 ‘Competition Act 1889’는 세계 최초의 경쟁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다음해인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에 비해 집행의 빈도와 경제적 영향력에 있어서 크게 조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Sandra Marco Colino,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3.).

11) 참고로 유럽연합(EU)은 1996년 저작권과 별개 권리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역내지침(Directive 96/9/EC)을 공표하였다. 이는 정보의 단순한 집합체, 창작성 없는 사실 모음이라고 해도 그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때에는 그 노력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쟁법 집행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II).¹²⁾ 그리고 TREB 사건의 개요와 캐나다 경쟁심판소(Competition Tribunal)의 TREB 판정¹³⁾(이하 “대상 판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III). 마지막으로 대상 사건과 우리의 네이버 사건을 비교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IV)을 정리하며 맺는다.

II. 캐나다의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

1. 개요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Guidelines, 이하 “IP 가이드라인” 또는 “IPEG”로 약칭)¹⁴⁾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반경쟁적 활동에 대

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로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2003년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개정을 하였다. EU,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저작권의 법리에 근거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 12) 학계에서 주로 논의된 외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내용은 주로 미국과 EU(유럽의 주요 국가 포함)의 것들이었다.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개관은 정완,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2011, 173-192면. 경쟁법 분야 비교법적 사례연구 역시 미국과 EU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데, 캐나다 경쟁법과 집행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로 신영수, “캐나다의 은행합병 규제와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제136호(2008.1.), 80-91면 참조.
- 13) The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6 Comp Trib 7, File No.: CT-2011-003, 판정문 원문, <<https://decisions.ct-tc.gc.ca/ct-tc/cdo/en/item/462979/index.do>>, 검색일: 2023.8.30.
- 14) 캐나다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 전문, <<https://ised-isde.canada.ca/site/competition-bureau-canada/en/how-we-foster-competition/education-and-outreach/publications/intellectual-property-enforcement-guidelines>>, 검색일: 2023.8.30. 이 가이드라인은 2000년 9월 제정되었으며, 2016년 3월 개정을 거쳐 2019. 3. 13.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한 조사를 수행하는 캐나다 경쟁당국의 판단기준과 접근방식을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캐나다 경쟁법(Competition Act, 이하 “법”으로 약칭 혼용)¹⁵⁾의 집행과 관련되는 법조계,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IP가이드라인은 경쟁당국이 특정 상황에서 경쟁법적 제재를 함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기준은 아니며, 경쟁당국의 법 집행 여부 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⁶⁾

법 집행에 관한 조사와 제소는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의 커미셔너(Commissioner)가 대표하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경쟁심판소(Competition Tribunal)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캐나다 연방법원의 소관에 해당한다.¹⁷⁾ 먼저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캐나다 연방정부 내 혁신, 과학 및 경제개발 부처(ISED)에 소속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캐나다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¹⁸⁾ 경쟁당국은 커미셔너가 대표하며 카르텔(법 제45조~제47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법 제78조, 제79조), 인수합병(법 제92조~제95조)¹⁹⁾ 등과 같은 경쟁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주요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쟁국은 경쟁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제소하여 판정부의 판정으로 시정을 명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심판소는 일종의 특별 행정심판기구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²⁰⁾ 캐나다 경쟁국²¹⁾과 캐나다 경쟁심판소²²⁾는 경쟁법 위

15) R.S.C., 1985, c. C-34. 캐나다 경쟁법 전문,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34/index.html>>, 검색일: 2023.8.30.

16) 미국의 DOJ와 FTC 공동으로 만든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는 2000년 제정된 캐나다 IP가이드라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17) OECD, “Licensing of IP rights and competition law - note by Canada”, DAF/COMP/WD (2019)1, 2019.

18) 캐나다 경쟁당국 홈페이지, <<https://ised-isde.canada.ca/site/competition-bureau-canada/en>>, 검색일: 2023.8.30.

19) 캐나다 합병규제 체계에 대해서는 신영수, 위의 보고서, 81-83면.

20) 캐나다 경쟁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t-tc.gc.ca/en/home.html>>, 검색일: 2023.8.30. 판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상근인 위원장(Chairperson)과 비상근으로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21) 캐나다 퀘벡주 가티노 시에 위치하고 있다.

22)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시에 위치하고 있다.

반과 관련된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캐나다 경쟁법을 집행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²³⁾

2. IP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표1: 캐나다 IP가이드라인의 목차]

목차(Table of contents)
1. 도입 (Introduction)
2.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 개요 (Overview of IP Law and Competition Law)
3.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차 (Interface between IP and Competition Law)
4. IP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Applying the Act to Conduct Involving IP)
5. IP 맥락에서의 분석틀 (The Analytical Framework in the Context of IP)
6. 경쟁정책에 대한 옹호 (Competition Policy Advocacy)
7. IP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IP) ²⁴⁾

위 IP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도입과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의 개요 및 관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에 해당하는 1~3.부분²⁵⁾에 대한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이하에서는 표1. 4~6.의 내용 중에서 대상 사건과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설명한다.

23) 캐나다의 경쟁당국과 경쟁심판소와 같은 관계는 조사와 심판 기능을 독립적으로 분리시킨 사례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직개편(2023.4.14. 시행)을 통하여 조사와 정책기능을 겸하는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도록 하여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정책/조사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2023. 3. 10)].

24) “7. IP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부분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관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해당 행위를 검토하는 경쟁당국의 접근 방식에 관한 기술이다. 다만, 여기서는 대상 사건과 관련된 예시사항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5) 이는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그 내용에 관하여는 정완, 위의 논문, 175-177면.

가. IP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일반적으로 IP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적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조사·분석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된다.²⁶⁾

- ① 문제된 행위의 식별²⁷⁾
- ② 관련 시장에 대한 정의
- ③ 행위자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④ 해당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지
- ⑤ 행위 관련 효율성 증진 또는 사업적 정당성의 고려

캐나다 경쟁당국의 집행원칙(enforcement principles)과 관련하여 경쟁법은 여러 조항에서 지식재산권을 언급하고 있다. 경쟁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1) 지식재산권 행사 이상의 반경쟁적 행위와 (2) 지식재산권의 단순한 행사로 나뉘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단순한 행사가 시장지배력 남용 조항의 목적상 반경쟁적 행위가 아님을 인정하는 법 제79조 제5항²⁸⁾을 일반조항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 법 제32조²⁹⁾와 같

26) IPEG 4.1. §31

27) IP와 관련되는 다양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인수합병, 라이선스 풀, 표준 설정, 끼워 팔기, 배타적 거래약정 등을 들 수 있다.

28)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n act engaged in pursuant only to the exercise of any right or enjoyment of any interest derived under the Copyright Act, Industrial Design Act,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Patent Act, Trade-marks Act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pertaining to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is not an anti-competitive act.”

29) 원문은 아래와 같다.

Powers of Federal Court where certain rights used to restrain trade

32(1) In any case where use has been made of the exclusive rights and privileges conferred by one or more patents for invention, by one or more certificates of supplementary protection issued under the Patent Act, by one or more trademarks, by a copyright or by a registered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so as to

- (a) limit unduly the facilities for transporting, producing, manufacturing, supplying, storing or dealing in any article or commodity that may be a subject of trade or commerce,
- (b) restrain or injure, unduly, trade or commerce in relation to any such article or

이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경쟁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정하여 규율하고 있다.³⁰⁾

경쟁당국은 법 제32조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충족된다고 주장되고 있는 경쟁상 피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구제를 모색한다. 만일 경쟁당국의 판단으로 관련 지식재산권 법령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경쟁국은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하여 연방법원에 특별한 구제수단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구제수단을 신청한 경우 연방법원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익(및 이로 인해 창출되는 혁신 인센티브)과 특정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공익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³¹⁾

나. IP 맥락에서의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1) 관련시장(Relevant Markets)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무형의 지식 또는 노하우,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프로세스, 지식재산권에서 파생되거나 지식재산권이 통합된 최종재 또는 중간재 중 하나를 기준으로 관련시장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높다.³²⁾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의 내용은 라이선스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조건으로 간주한다. 경쟁당국은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정의하지 않고 라이선스 이용자에게 부여된 지위를 통해 이것이 실제로 보호하는 대상(예: 무형의 지식

commodity,

(c) prevent, limit or lessen, unduly, the manufacture or production of any such article or commodity or unreasonably enhance the price thereof, or

(d) prevent or lessen, unduly, competition in the production, manufacture, purchase, barter, sale, transportation or supply of any such article or commodity,

the Federal Court may make one or more of the orders referred to in subsection (2)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that subsection.

30) IPEG 4.2. §35

31) IPEG 4.2.2. §47; 다만 이러한 특별 구제신청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32) IPEG 5.1. §57

또는 노하우, 프로세스, 최종재 또는 중간재)에 초점을 두고 관련시장을 확정하고 있다.³³⁾

(2)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도, 진입 조건, 기술 변화 속도, 기존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 능력, 시장에 미치는 수평적 효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³⁴⁾ 경쟁국이 이러한 요소를 평가하는 순서는 경쟁국이 해당 행위를 심사하는 개별 법 조항 및 관련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³⁵⁾

(3) 반경쟁적 효과(Anti-competitive Effects)

인수합병, 라이선스 또는 기타 합의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의 경쟁 효과를 평가할 때, 경쟁국은 해당 행위가 수평적 효과, 즉 대체재를 생산하는 기업 또는 잠재적으로 대체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³⁶⁾ 경쟁국이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하려면 해당 행위가 수평적 효과를 초래해야 하며, 경쟁국은 해당 행위가 가격 및 생산량과 같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조정된 방식으로 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³⁷⁾

(4) 효율성 고려사항(Efficiency Considerations)

경쟁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활발한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경쟁에 대한 제한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직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결합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 합의 및 거래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시장지배력을 창출하거

33) IPEG 5.1. §59

34) 캐나다 기업결합 집행가이드라인(Merger Enforcement Guidelines)은 시장지배력을 평가요소로 조사당국이 고려하는 다양한 다른 요소를 추가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 경쟁, 사업 실패 및 퇴출, 수용가능한 대체재의 존재 여부, 효과적인 잔존 경쟁,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쟁자의 제거, 변화와 혁신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35) IPEG 5.2. §61

36) IPEG 5.2.3. §67

37) IPEG 5.3. §69

나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제품의 선택, 품질, 생산량 및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치를 가지는 저작물이나 발명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역동적인 효율성과 동태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지식재산권법은 창작과 발명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일시적 시장지배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행위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³⁸⁾

(5) 사업상 정당화 사유(Business Justifications)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가 경쟁법 제79조에 따른 반경쟁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쟁당국은 해당 행위의 친경쟁적 근거까지 아울러 고려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자와 유통업체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브랜드 간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 한편 두 잠재적 경쟁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는 개발되지 않았을 신제품이 개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상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 내부 경쟁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³⁹⁾

다. 경쟁정책에 대한 옹호

경쟁당국은 시장 경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행사범위에 관한 정책적 논의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경쟁당국은 소송절차에서 경쟁 주창의 관점에서 소송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법원과 연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당사자의 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권이 부적절하게 정의, 강화 또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⁴⁰⁾

경쟁국이 소송참가를 허가받은 대표적 사례로 아포텍스(Apotex Inc.) 대 일라이릴리(Eli Lilly and Co.) 사건⁴¹⁾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쟁당국은 특허 양도

38) IPEG 5.4. §71

39) IPEG 5.5. §73

40) IPEG 6. §74

41) Eli Lilly and Co. v. Apotex Inc. (F.C.A.), 2005 FCA 361 (CanLII), [2006] 2 FCR 478.

가 캐나다 경쟁법 제45조 제1항⁴²⁾에 위배되는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의 또는 약정(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양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법 제50조에 의하여 특허권 이전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 이하 “FCA”)은 경쟁국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그러한 해석은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과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다.

III. TREB 사건 개요와 TREB 판정의 주요 내용

1. TREB 사건 개요

1920년 설립된 TREB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중개 관련 기관으로 현재 약 70,000명의 중개사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TREB의 중개사 회원들은 지역 부동산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TREB의 MLS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TREB는 MLS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데,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매물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부동산 거래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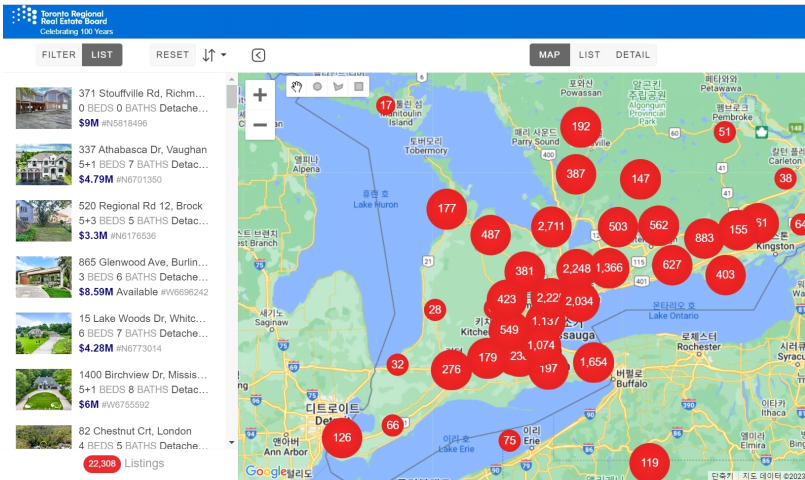
42) 원문은 아래와 같다.

Conspiracies,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competitors

45(1)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with a competitor of that person with respect to a product, conspires, agrees or arranges

- (a) to fix, maintain, increase or control the price for the supply of the product;
- (b) to allocate sales, territories, customers or markets for the production or supply of the product; or
- (c) to fix, maintain, control, prevent, lessen or eliminate the production or supply of the product.

[그림1: TREB 홈페이지 매물목록 화면]43)



TREB의 MLS 시스템에는 1986년부터 현재의 부동산 매물 목록과 과거 부동산의 거래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TREB는 MLS 데이터베이스 정보 중 일부를 회원들이 데이터 전송망을 통해 수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회원들은 그들의 가상사무소(VOW)에서 고객들이 이 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TREB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과거 판매된 부동산 리스트와 가격데이터 등이 데이터망을 통해 VOW 등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전송을 제한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된 TREB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44)

- 43) 주택구입을 원하는 구매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의 매물목록 리스트(위 그림1.)는 토론토 지역의 개괄적인 물건의 현황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매자는 MLS서비스를 사용하는 중개인과 약정을 맺고 개별 매물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44) The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6 Comp Trib 7, 판정문 [95]; 발췌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Rule 800 and 805 : A member of the public may only access MLS information on a Member's VOW if: (1) the Member has first established a broker-consumer relationship; (2) the Member obtains the name and a valid email for a consumer; (3) the consumer has agreed to prescribed "terms of use"; and (4) the consumer creates a user name and password for the Member's VOW.

Rule 823 : A Member, whether through their VOW or by any other means, may not

규칙 800 및 805 : 일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회원의 서약서에 있는 MLS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 (1) 회원이 먼저 중개인-소비자 관계를 설정한 경우,
- (2) 회원이 소비자의 이름과 유효한 이메일을 확보한 경우,
- (3) 소비자가 규정된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경우,
- (4) 소비자가 회원의 VOW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생성한 경우.

규칙 823 : 회원은 VOW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관련 법률, 규정 및 RECO 규칙에 따라 다른 회원과 그 중개인 및 판매원 전용으로 의도된 다음 MLS 데이터를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할 수 없다.

- o 만료, 철회, 정지 또는 종료된 매물, 보류 중인 판매 또는 임대 매물(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매물을 포함);
- o 다른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상;
- o 판매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 o 리스팅된 부동산의 보여주기 또는 보안에 관한 사항과 같이 협력 중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 또는 발언; 그리고
- o 완료된 거래의 실제 판매 가격 사용 방법이 RECO 규칙 및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 데이터.

make available for search by, or display to, consumers the following MLS data intended exclusively for other Members and their brokers and salespersons, subject to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the RECO rules:

- o Expired, withdrawn, suspended or terminated listings, and pending solds or leases, including listings where sellers and buyers have entered into an agreement that has not yet closed;
- o The compensation offered to other Members;
- o The selle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seller to do so;
- o Instructions or remarks intended for cooperating brokers only, such as those regarding showings or security of listed property; and
- o Sold data, unless the method of use of actual sales price of completed transactions is in compliance with RECO rules and applicable privacy laws

위 규칙 제823조에 따라 전송이 제한된 데이터는 이메일, 팩스, 복사 등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중개사 회원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잠재적 부동산 판매자들은 매매의뢰를 할 때 자기 주거지역의 과거 집값 판매동향을 보고 얼마에 판매가격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TREB의 정책은 VOW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할 수 없어 중개인과 고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 문제가 되게 된다.

2011년 5월 캐나다 경쟁당국은 TREB의 문제된 행위를 조사하였고, 이후 2013년 캐나다 경쟁심판소는 당시 46,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TREB이 VOW를 운영하는 소속 부동산 중개사들과 실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위반의 적용을 기각하였다.⁴⁵⁾ 캐나다 경쟁당국은 이에 불복하였고 이후 연방항소법원(FCA)에서 경쟁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자⁴⁶⁾ 2015년 경쟁당국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TREB의 문제된 행위가 캐나다 경쟁법 제79조제1항 (a), (b), (c) 요건⁴⁷⁾을 구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쟁심판소에 이를 재차 제소하였다.

45)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3 Comp Trib. 9.

46)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4 FCA 29.

47) 캐나다 경쟁법 제79조 (1)(a)항은 실질적 혹은 완전한 시장지배(substantial or complete control)를, (1)(b)항은 반경쟁적 행위의 실행(practice of anti-competitive acts)을, (1)(c)항은 실질적인 경쟁 제한(substantial prevention of competition)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ohibition if abuse of dominant position

79(1) If, on application by the Commissioner or a person granted leave under section 103.1, the Tribunal finds that

- (a) one or more persons substantially or completely control, throughout Canada or any area thereof, a class or species of business,
- (b) that person or those persons have engaged in or are engaging in a practice of anti-competitive acts, and
- (c) the practice has had, is having or is likely t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or lessening competition substantially in a market,

the Tribunal may make an order prohibiting all or any of those persons from engaging in that practice.

2. TREB 판정의 주요 내용

2016년 4월 27일 경쟁심판소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적용 신청 중에서 일부 위반행위를 인정하였고(이하 “대상 판정”이라고 약칭),⁴⁸⁾ 이후 TREB가 부동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TREB는 항소하였으나 2017년 12월 연방항소법원(FCA)은 경쟁심판소의 판단의 적법함을 확인하여 TRE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⁴⁹⁾ 2018년 8월 캐나다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은 심리불속행으로 대상 사건을 종결하였다.⁵⁰⁾ 이하에서는 캐나다 경쟁심판소의 2016년 4월 27일자 TREB 판정(이하 “대상 판정”으로 약칭)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가. 대상 판정의 개요

부동산 중개인 및 회원의 암호로 보호되는 가상 사무실 웹사이트(VOW)에서 MLS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함으로써 회원이 해당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는 TREB의 행위는 캐나다 경쟁법 제79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구성하며, 이에 커미셔너는 경쟁심판소에 TREB의 실질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구하였다.

첫째, TREB는 MLS 데이터의 표시 및 사용에 대한 현재 제한을 시행하지 않는다. 둘째, TREB는 암호로 보호되는 VOW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원에게 전자 데이터 피드에 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한다.⁵¹⁾

48) The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6 Comp. Trib. 7, CT-2011-003 (April 27, 2016); 판정문 원문자료, <<https://decisions.ct-tc.gc.ca/ct-tc/cdo/en/item/462979/index.do>>, 검색일: 2023.8.30. 이하부터 판정문으로 약칭한다.

49) The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7 FCA 236(December 1, 2017).

50) Toronto Real Estate Board v Commissioner of Competition, SCC, 2018-08-23, case 37932.

51) 구제조치의 세부 조건은 TREB가 VOW와 관련하여 채택한 규칙 및 정책의 특정한 경쟁 제한적 측면과 관련되며, 시정명령의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이 구제조치에 관한 서면 제출 기회를 주고 구두 진술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되었다. “TREB은 (1) 회원들

이에 대하여 TREB는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VOW에 표시될 수 있는 데이터 피드에서 문제되는 정보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TREB의 정책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TREB의 정책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점진적이며 크지 않다고 주장(항변)하였다.

사건의 심리 결과, 경쟁심판소는 커미셔너가 신청한 경쟁법 제79조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⁵²⁾ 판정부는 먼저 TREB이 법 제79조 (1)(a)항의 의미 내에서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서비스 공급을 실질적으로 또는 완전히 통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판정부는 법 제79조 (1)(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TREB가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했으며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은 VOW 제한의 설정과 유지를 골자로 한다. 판정부는 VOW 제한이 법79조 (1)(c)항이 고려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VOW 제한이 토론토 지역(GTA)⁵³⁾에서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서비스 공급의 비가격 부분의 경쟁을 상당히 줄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제한행위는 주거용 부동산 서비스의 혁신, 품질 및 범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경쟁심판소는 커미셔너가 제출한 신청서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 대상 판정의 이유

(1) 관련시장의 확정

경쟁심판소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의 관련 시장이 GTA의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서비스라고 판단하였다.⁵⁴⁾ 첫째,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는 일

이 MLS 데이터를 자신의 VOW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 (2)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장치에서 MLS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것, (3) 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등록되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VOW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VOW 데이터 피드에서 판매 데이터를 제외시키지 않을 것”

52) 판정문 [1]~[6](이하 상세한 이유는 나누어 설명한다).

53) GTA는 'Greater Toronto Area'의 약자이며, 토론토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그림1. 참조)을 포함한 지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반적으로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체 묶음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중개서비스에 포함된 작은 묶음 단위의 계약을 선호할 수 있다. 둘째, 주택 구매자는 GTA에서 주택구입 수수료로 지불하는 평균 절대 금액(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명목 및 조정 기준)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MLS 기반 서비스에서 상당한 정도로 전환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더 증가하였다. 셋째,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서비스 공급자가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범위의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 중 일부는 인터넷 또는 다른 출처를 통해 별도로 또는 훨씬 더 작은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는 MLS 기반 서비스에서 다른 공급원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다른 서비스는 MLS 기반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속성을 가진다. 넷째, 중개인은 그들의 고객이 TREB의 MLS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단일하고 뚜렷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관점이다.

(2) 실질적 또는 완전한 통제 : 법 제79조 (1)(a)항

경쟁심판소는 TREB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⁵⁴⁾ 판정부는 경쟁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배제 능력은 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경쟁 수준 이하의 비가격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시장지배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판정부는 TREB가 주거용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시장의 투입요소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TRE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부는 TREB와 같은 협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가격, 품질, 다양성, 서비스, 광고 또는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판정부는 TREB가 MLS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하고 이용규칙을 설정·시행하여 현상 유지

54) 판정문, [114]~[161]

55) 판정문, [214]~[220]

를 위협하는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혁신적인 제품을 배제함으로써 회원을 경쟁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는 대리인과 중개인이 MLS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고는 서비스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커미셔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반경쟁적 행위의 실행 : 법 제79조 (1)(b)항

경쟁심판소는 2011년에 TREB가 특히 GTA에서 VOW 기반 경쟁자를 제외하기 위해 MLS 정보의 온라인 사용 및 표시를 제한했다는 커미셔너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TREB의 제한행위가 주로 개인정보보호, 특히 부동산 판매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라는 TREB의 항변을 배척하였다.⁵⁶⁾ 판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TREB의 우려는 사후적 고려사항으로 TREB가 VOW 제한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TREB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아니라 VOW 중개업체의 확장을 막고 VOW가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거래에서 TREB 회원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부는 TREB의 이용제한 정책 채택에 이르는 경과를 종합하여, TREB 회원 및 기타 중개인이 VOW와의 경쟁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입장에 주목하였다. 판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TREB의 입장에 대해 증언을 했던 핵심증인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⁵⁷⁾ 판정부는 TREB가 미국의 유사한 정책⁵⁸⁾을 기반으로 VOW 정책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GTA의 VOW에 불리하게 중요한 수정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는 TREB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해당 규정 준수와 관련된 TREB의 우려 주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웹사이트에 판매된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한 특정 대형중개회사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⁵⁹⁾

56) 판정문, [390]~[392]

57) 판정문, [381]

58) 미국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연합회가 제정한 정책을 의미한다.

59) 판정문, [372]; 판정부는 TREB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42,500명의 회원이 관련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었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

(4) 경쟁의 실질적 제한 : 법 제79조 (1)(c)항

경쟁당국의 커미셔너측 증인은 TREB의 제한행위와 TREB의 제한이 제거되면 GTA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언했다. 판정부는 이러한 증언을 기초로 TREB의 VOW 제한행위의 아래 다섯 가지 반경쟁적 효과를 실시하였다.

- ① 진입장벽의 증가 : 웹 기반 및 기타 중개업체에 의한 관련 시장 진입 및 확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⁶⁰⁾
- ② 서약에 부과되는 비용 증가 : TREB의 VOW 제한은 전체 VOW를 운영하는 중개업체의 비용을 인상하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 야기⁶¹⁾
- ③ 중개 서비스 범위 축소 : TREB의 VOW 제한이 없었다면 VOW에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도구, 기능 및 기타 서비스가 있었을 것⁶²⁾
- ④ 제공 중개 서비스의 품질 저하 : TREB의 VOW 제한이 없었다면 소비자에게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제공되는 특정 중요한 서비스의 품질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었음⁶³⁾
- ⑤ 혁신의 감소 : TREB의 VOW 제한이 없었다면 관련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있었을 것이고, VOW를 운영하는 중개업체가 역동적인 경쟁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⁶⁴⁾

판정부는 위 효과들을 종합하여, TREB의 이용 제한행위가 GTA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음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록 한 사실과 조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판정문, [395]-[399]; 만일 TREB가 진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우려한다면 최소한 판매된 정보와 같은 정보가 회원에게 배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커미셔너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 들였다.

60) 판정문, [507]-[550]

61) 판정문, [555]-[563]

62) 판정문, [564]-[583]

63) 판정문, [587]-[598]

64) 판정문, [600]-[619]

다. TREB의 행위가 저작권의 단순한 행사인지

경쟁심판소는 TREB의 행위가 저작권의 단순한 행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설시를 하였다. TREB는 VOW에서 표시할 목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ML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순수한 저작권(copyright)의 행사에 해당하고,⁶⁵⁾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캐나다 경쟁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경쟁법의 적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쟁심판소는 먼저 TREB의 MLS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한 저작권이 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다른 증거에 근거하여 TREB가 부동산 목록에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기계적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MLS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를 배열하고 정렬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과 독창성이 발휘되지 않아 창작성이 낮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⁶⁶⁾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은 오직 데이터의 수집 혹은 배열에 독창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데이터의 정렬에 독창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적 창조물으로써, 그 성과가 기술(skill)과 판단(judgment)의 결과물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전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MLS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공한 데이터를 TREB가 단순히 획득(capturing)하고 편재(compiling)한 행위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성과를 생성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저작권 보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성과에는 반드시 원천 데이터에 상당한 지적 실체를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5) 캐나다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권리로 직접 보호하지는 않고, 창작적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복제, 배포 및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66) 판정문 [732-738]; 판정부는 가사 TREB가 ML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VOW 제한은 단순한 지적재산권 행사 이상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 제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데이터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의 유형

데이터 주도의 경제(data-driven economy)하에 플랫폼 기업은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면서 제품·서비스 내지 정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입자)와 소비자(이용자)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보유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기존 사업자 역시 새롭게 창출된 시장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거나⁶⁷⁾ 또는 그러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기업(특히 플랫폼 기업)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많이 끌어 모으고 그 순환고리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형성·유지·강화하는 것은 혁신적 프로세스의 결과로 원칙적으로 경쟁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⁶⁸⁾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수집·이용·공유하는 과정에 있어 데이터 접근 제한행위(exclusionary conduct)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다면 이는 경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⁹⁾

- ① 배타적 거래 : 입점업체나 개별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에 경쟁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⁷⁰⁾

67) 양 회사의 보유 데이터가 기업결합으로 통합되는 경우 그 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이 형성되고 다른 경쟁자는 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법이 없어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제한되고 결합 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이 저하될 우려가 입증될 경우 경쟁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68) 빅데이터 자체의 가치중립성과 이를 활용하려는 사업전략의 목적과 효과를 구별하여야 한다(Maurice Stucke and Allen Grunes, 앞의 책, p.2).

69) OECD, "Big Data: Bringing Competition Policy to the Digital Era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DAF/COMP(2016)14, 2016, Para. 64-70.

70) 위 보고서 Para. 66; 데이터 기반 배타적 행위의 목적은 경쟁업체가 주요 데이터에 적시

- ② 차별적 접근 허용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가 사업 활동에 필요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⁷¹⁾
- ③ 끼워팔기 : 기업이 자산이 보유한 데이터 세트를 자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경우⁷²⁾

대상 사건은 이러한 TREB의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문제된 한편, 네이버 부동산 사건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다.⁷³⁾ 네이버 사건은 앞서 언급한 OECD의 데이터 배제행위의 유형 중 배타적 거래(①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상 사건은 데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허용(②유형)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판단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막거나 데이터 이동성을 억제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 관련 경쟁 우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제의 목표는 제3자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 71) 위 보고서 Para. 67; 그 예로 프랑스 회사 Cgedim은 독점적 통제권을 가진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주요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거부한 혐의로 2014년 프랑스 경쟁당국(the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 72) 위 보고서 Para. 68; 영국 경쟁당국(CMA)은 2015년 기업이 번들링 또는 결합 전략을 사용하여 일부 시장에서 통제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은 데이터 세트 구매를 자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연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73) 우리 네이버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었다(공정위 의결서 64-66면).

2. TREB 사건과 네이버 부동산 사건의 비교

[표2: TREB 사건과 네이버 부동산 사건의 비교]

	TREB 사건	네이버 부동산 사건
문제된 행위	TREB은 이용규칙(rule)을 근거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과거 판매된 부동산 리스트와 가격데이터 등이 데이터방을 통해 VOW에 전송하는 것을 제한함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와 부동산매물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삽입함 ⁷⁴⁾
관련 시장의 획정	GTA의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서비스	국내의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정보 제공자 시장 ⁷⁵⁾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MLS 기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단일하고 뚜렷한 관련 시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TREB가 경쟁 수준 이하로 비가격적 요소(즉 TREB의 VOW 제한이 없었다면 소비자에게 시장분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의 품질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었음)를 줄일 수 있음을 근거로 시장지배력을 인정	매물건수 기준 시장점유율과 이용자 측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점, 네트워크 외부효과 등 당해 시장의 특성 및 피심인의 일반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피심인과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심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구조 자체를 변경하고 이 사건 배타조건부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위를 인정 ⁷⁶⁾
경쟁제한성	제공 중개 서비스의 품질 저하, 웹 기반 및 기타 중개업체에 의한 관련 시장 진입 및 확장에 증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진입장벽의 증가, TREB의 VOW 제한은 전체 VOW를 운영하는 중개업체의 비용을 인상하기 때문에 경쟁자의 경쟁력 약화, TREB의 VOW 제한이 없었다면 VOW에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도구, 기능 및 기타 서비스가 있었을 것이므로 VOW의 중개 서비스 범위 축소라는 혁신의 감소	네이버의 배타조건부 거래조건은 거래상대방의 멀티호밍 유인을 차단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확대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피심인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당해 시장에서의 혁신저해 및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 인정 ⁷⁷⁾

	TREB 사건	네이버 부동산 사건
정당성 항변	TREB의 제한행위가 주로 개인정보보호, 특히 부동산 판매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항변	합리성 여부와 관련하여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제한을 통해 소비자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⁷⁴⁾
권리행사의 근거가 된 지식재산권	TREB의 행위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단순한 저작권의 행사에 불과함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권자인 점, ‘확인매물시스템’, ‘확인매물서비스’ 및 ‘확인매물정보’는 피심인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인 점 등에 근거하여 피심인의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⁷⁵⁾

3. 대상 사건의 시사점

대상 사건에 관하여 캐나다 내의 분석은 양면시장에 관한 논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⁸⁰⁾ 캐나다 내에서 법적 관점에서 대상 사건은 필수설비이론의 확장 적용(expanded essential facilities)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⁸¹⁾ 그러나 소위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인 투입물이

74) 공정위 의결서 26-38면.

75) 공정위 의결서 45-47면.

76) 공정위 의결서 47-54면.

77) 공정위 의결서 59-64면.

78) 공정위 의결서 65면(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의 부당성 판단 중).

79) 공정위 의결서 67-69면.

80) 대표적으로 Grant Bishop, Issues for Two-Sided Platforms in Canadian Competition Law, Canadian Competition Law Review 26(1), pp.1-36, 2013.

81) Jeffrey Church, The Lamentable Rise of an Expanded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n Canada: The Troubling Economic Foundations of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Decision, Canadian Competition Law Review 31(1). 2018, p.123면 이하.

며, 경쟁자가 합리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경쟁자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를 복제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경우 필수 설비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비경쟁적이며 독점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므로 필수설비이론을 데이터 분야에 접목하는 법리 구성은 우리 경쟁법의 법리 구성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정은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도 관련성이 크다. 지금까지 EU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내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행위를 경쟁법적으로 제제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 Magill 사건⁸²⁾, IMS Health 사건⁸³⁾과 Microsoft 사건⁸⁴⁾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EU에서의 사례들이다.⁸⁵⁾ 이들은 공통적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데이터의 보유자가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허락을 거절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들이었다.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행위가 그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 영향에 따라 경쟁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내포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의 보유자가 취한 데이터 접근 제한행위도 경쟁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⁸⁶⁾ 대상 사건 역시 TREB

82) Judgment in RTE and ITV v Commission ('Magill'), C-241/91 P and C-242/91 P, ECLI:EU:C:1995:98,[1995] ECR I-743. Magill 사건은 TV 프로그램 순서에 포함된 정보가 문제되었는데 관련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TV 방송국들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종합 주간 TV 프로그램 순서 가이드를 제작한 Magill의 새로운 상품보호의 필요성이 대립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TV 방송국들의 정보 접근 거절 행위가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방해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되는 반면 저작권에 기초한 정당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3) Judgment in IMS Health, C-218/01, ECLI:EU:C:2004:257, [2004] ECR I-5039.

84) Judgment in Microsoft v Commission, T-201/04, ECLI:EU:T:2007:289, [2007] ECR II-3601.

85) 홍대식·안정민,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검토”,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보고서(2022), 106-108; 세 사건 모두 접근 허락 거절이 문제 된 정보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 정보에는 해당하지만 개인정보를 내포한 정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 사건에서 주장된 저작권에 기초한 정당화 사유가 개인정보를 내포한 정보가 문제 되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정당화 사유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은 개인정보를 내포한 정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측에서 MLS 데이터의 표시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의 정당한 근거로 저작권의 단순한 행사 여부와 함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주장하였다. 다만, 대상 판정에서 저작권의 단순한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시과정을 거쳐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TREB의 주장은 해당 데이터 접근제한의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아 배척되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 제한행위가 해당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에 기반하고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은 이익형량 내지 법적용의 판단결과에 따라 경쟁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항변)은 우리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단계에서 경쟁제한 효과나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로서 비교형량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경쟁법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병행될 것이다. 대상 사건에 적용된 캐나다 경쟁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1) 지식재산권 행사 이상의 반경쟁적 행위와 (2) 지식재산권의 단순한 행사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관련 배타적 거래에 있어 합리적 정당성 인정 여부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경쟁법 적용제외 판단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쟁법 적용의 과정에 있어 양자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만일 데이터 관련 배타적 거래에 있어서 해당 거래의 정당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지식재산권의 행사 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항변)하더라도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TREB 사건과 우리 네이버 사건의 비교 내용 중 네이버 부동산 사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권과 같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행사 주장(항

86) 같은 취지 홍대식·안정민, 위의 보고서, 111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행위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와 유사한 쟁점과 판단구조를 가진다. 접근 제한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저작권과 경쟁법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가치 형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접근 제한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의 경합하는 법의 적용(제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에 더하여 확인매물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금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과목⁸⁷⁾에 터잡은 '무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⁸⁸⁾ 이는 문제된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직접적 행사는 아니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라는 주장(항변)으로 경쟁법의 적용 면제 판단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권리행사의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권리행사 정당성에 관한 주장(항변)은 해당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물, 한정제공데이터 기타 영업비밀 등으로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한 지식재산 관련 권리들은 인정요건과 행사방식에 있어 각기 차이점이 있고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도 상이하므로 어떠한 범위까지 공정거래법 제117조에 정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더 다양한 각국의 사례들이 논의되고, 이를 통해 우리 시장경쟁의 현실에 부합하는 법리를 도출하는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8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중략)...

과.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88) 네이버측 법적 대응방향에 관한 기사로 연합뉴스, 2020. 9. 6.자 기사, 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했다” 과징금에 네이버 “혁신 외면”.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에 관한 권리 보호수단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과목(일반조항)과 함께 최근 도입된 제2조제1호카목(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사용·공개행위)이 그 주요한 보호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세한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논의는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2019.1.) 109-117면 참조.

참고문헌

단행본, 논문 및 보고서

- 김용훈,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2018.
- 정 완,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2011.
- 신영수, “캐나다의 은행합병 규제와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제136호, 2008.1.
-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1.
- 오승환,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이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
- 홍대식·안정민,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검토”,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보고서, 2022.
- Maurice Stucke and Allen Grunes, Big Data and Competitio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Sandra Marco Colino,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Grant Bishop, Issues for Two-Sided Platforms in Canadian Competition Law, Canadian Competition Law Review 26(1): 1-36, 2013.
- Jeffrey Church, The Lamentable Rise of an Expanded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n Canada: The Troubling Economic Foundations of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Decision, Canadian Competition Law Review 31(1): 122-187, 2018.

OECD, “Big Data: Bringing Competition Policy to the Digital Era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DAF/COMP(2016)14, 2016.
_____, “Licensing of IP rights and competition law - note by Canada”, DAF/COMP/WD(2019)1, 2019.

홈페이지 및 링크자료

캐나다 TREB 홈페이지, <<https://treb.ca>>
캐나다 경쟁당국 홈페이지, <<https://ised-isde.canada.ca/site/competition-bureau-canada/en>>
캐나다 경쟁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t-tc.gc.ca/en/home.html>>
캐나다 경쟁법 전문,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34/index.html>>
캐나다 지식재산권 집행가이드라인 전문, <<https://ised-isde.canada.ca/site/competition-bureau-canada/en/how-we-foster-competition/education-and-outreach/publications/intellectual-property-enforcement-guidelines>>
The Commissioner of Competition v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 2016 Comp Trib 7 (CT-2011-003), 판정문 원문, <<https://decisions.ct-tc.gc.ca/ct-tc/cdo/en/item/462979/index.do>>

보도자료 및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019호 (사건번호 2018서감034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2020. 9.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정책/조사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2023. 3. 10)
연합뉴스, 2020. 9. 6.자 기사,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갑질했다” 과징금에 네이버 “혁신 외면”
조선비즈, 2022. 8. 16.자 기사, “네이버, 부동산 갑질 해명 ‘첩첩산중’”
LA중앙일보, 2023. 6. 1.자 기사, “부동산 웹사이트” 등

Abstract

Case Study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Database Restrictions

- Focusing on IP Guideline and TREB Ruling in Canada -

Na, Ji-Won*

In a data-driven economy, companies (esp. platform companies) with large amounts of data can use it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and improvements. However, when big data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companies, new entrants may find it difficult to enter the market or, if they do, to compete. It is legal for companies to collect significant amounts of data and to manage and control it. However, the issue of misuse of data to increase entry costs and extend market power is being debat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the need for regulation at the competition law.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Canadian Competition Burea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Guidelines (the "IP Guidelines") and the case of the Toronto Real Estate Board's (the "TREB") restrictions on the use of a real estate database in the Toronto area, which addressed whether the restrictions constituted an abuse of market power under Canadian competition law(the "Case").

The case has been a long-running legal battle that began in 2011 with an investigation by the Canadian Competition Bureau and concluded in 2018 with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As such, it is considered to be a precedent-setting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abuses of market power in relation to database restriction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lso imposed a corrective order and a fine on NAVER for the act of preventing a third party (a competitor such as Kakao) from providing real estate listing information provided by NAVER through a contract with a real estate information provider. The case contains

* Associate Professor, Ajou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many similar legal issues to the NAVER case and is worthy of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Korea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rough foreign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on platform operators' data access restriction.

Key words : MLS, Database, Copyright, Market Power, Abuse of dominance, Exercise of IP, Competition Law Exemption.